

# '솔로' 울리는 결혼정보업체

#1 직장인 조모(55·목포시)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던 결혼정보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2009년 12월 재혼을 위해 광주의 한 결혼정보업체에 108만원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조씨. 2년에 10회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업체는 가입 당시 조씨에게 2명의 여성들을 소개하는데나 이후로 감감무소식이었다. 지난해 3월 조씨가 업체에 항의하자 1명의 여성성을 다시 소개했다. 또 수개월이 흘렀지만 더 이상 대상자를 만날 수는 없었다. 조씨가 전화하면 업체 관계자는 회피하기 일쑤였고, 어찌다 연락이 닿으면 담당 매니저가 병원에 입원중이라는 핑계를 댔다.

#2 직장인 김모(32·광주시)씨는 자신이 이용하던 모 결혼정보업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3월 B결혼업체에 80만원의 가입금을 내고 총 7회의 만남을 주선 받기로 계약한 김씨는 3회의 만

2년에 10회 만남 주선 계약하고 고작 1~2회 만

시간 끌기·전화 회피... 이용자 환불 요구 잇따라

신상정보 공개 꺼리는 재혼자들 피해 더욱 심각

남을 가진 후 업체와 연락이 끊겼다. 업체는 어느 순간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담당 매니저는 "자신도 회사를 그만뒀고 피해자 아니 연락을 그만하리"고 했다. 3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와 광주YWCA 등에 따르면 광주시에 등록된 조·재혼, 국제결혼 등 결혼정보업체는 모두 12개로, 회원 가입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다. 그러나 결혼정보업체의 계약내용 불이행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사례가 매달 평균 3~4건에 이른다.

특히 재혼 전문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에 비해 재혼을 상담하는 가입자들이 신상정보의 외부 공개를 꺼리는 점과 가입연령이 주로 40대 이상이다 보니 사회적 시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를 쉽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을 암울하고 있는 것이다. 결혼정보업체는 지난 1999년 이후 우후죽순적으로 늘었지만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규정하거나, 그 피해에 따른 보상규정이 없는 탓

도 크다. 영세업체의 경우 회사 규모나 가입회원에 대한 환불규정 등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 피해형태도 천차만별이다.

업체 대부분은 가입금을 받은 후 1~2회 가량만 자리를 만들고, 이후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며 시간을 끄는 수법으로 계약 기간을 넘기기 일쑤였다.

재력가로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안고 있는 이성과 만남을 주선하는 등 가입자의 요구 조건과 상이한 이성을 마구잡이로 소개하기도 했다. 가입 시, 영수증은 물론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발생 뒤 '나 몰라라'하는 업체도 있었다.

광주시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일정 기준의 업체 규모를 갖추고 피해 보상책을 마련한 회사들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순천보선 금품제공 목사 등 3명 고발

### 전남도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 치러질 예정인 순천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및 사전 선거운동을 한 목사와 예비후보자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목사는 신도와 목사 150명에게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를 여는데, 이곳에서 개소식 예배를 할 예정이나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 뒤 참석자 23명에게 60만원 상당의 점심식사와 양말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C씨와 지인 D씨 등 2명은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 30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A목사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신도 등 23명에게 1인당 52만1250원씩 모두 1198만875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부취재부분=김은중기자 ejkim@



**무각사 연등달기** 불기 2555년 석가탄신일(5월 10일)이 한 달여 앞으론 디카온 가운데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불자들이 형형색색의 연등을 매달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성당 연쇄절도 용의자 검거

### 3개 경찰서 공조수사

광주지역 성당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사건(광주일보 4월2일 3면)의 용의자가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광주지역 성당을 상습적으로 터 영업용 택시기사·정모(2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광주지역 성당 12곳에 심야시간대 몰래 들어가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성

당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던 정씨는 대부분의 성당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당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남부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죽적을 제거해 정씨가 운동화를 신고 성당에 침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북부경찰은 성당 인근에 설치된 CC-TV에서 정씨의 택시를 확인했다. 또 서부경찰은 2년여 전 정씨를 검거한 경험과 정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운동화, 택시 등을 토대로 정씨를 붙잡았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불기 2555년 석가탄신일(5월 10일)이 한 달여 앞으론 디카온 가운데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불자들이 형형색색의 연등을 매달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古家 고향의 맛**

## 고가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4월 1일 개시**

**1인분 13,000원**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원비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고가 약오리탕**

**약탕기 홍삼 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 강진장학재단 기금 불법조성 의혹 수사

### 경찰 "객관 증거 확보"

### 황주홍 "무혐의 확신"

**내용참** (8284)  
김종진



### 일가족 3명 사망 사고

### 운전자 음주운전 때문

지난달 23일 광주에서 발생한 '운남동 일가족 3명 사망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운전자 김모(42)씨의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김씨의 혈액을 재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5%에 이른다는 검출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형사 처벌 여부를 사망한 아내와 두 자녀에 대한 악물 반응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할 계획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死층' 피하려다 보증금 날려

### 4층 '402호'를 현관문 적힌 '502호'로 전입신고

### 경매 과정에서 등기부와 달라 배당금 못 받아

광주의 한 공동주택에 사는 박모(26)씨는 지난해 10월 말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입주 당시 무심코 현관문에 적힌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핵근이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9월께 보증금 1300만원을 주고 납구 월산동 모 공동주택 4층에 입주했다.

박씨는 자신의 집이 등기부상 '402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502호'로 전입신고를 했다. '4자'를 기피하는 한국의 관습 탓인지 현관문과 우편함에 호수가 모두 '502호'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큰 낭패를 냈다. 임차인의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채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된 것이다. 등기부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다르다는 것

이유였다.

참다못한 박씨는 이웃인 '503호'(등기부상 403호)와 '505호'(405호) 등과 함께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박씨 등은 "현관문에 적힌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했고, 1순위 청권자인 금융기관도 4층에 임차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고상영 판사는 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등록상 호수가 등기부와 다

르게 기재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

상 호수와 일치하지 않는 원고들

의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

효하지 않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으로 대형력을 갖지 못한다"

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 전복장터

전복장을 찾а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평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상상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